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44
----------	-------

제출년월일 : 2024. 1. 22.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2022. 12. 26.)에 따라,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 조문의 자구 정비 등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규정 (안 제2조)
-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확대 (안 제3조)
 -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안 제3조제1항)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안 제3조제2항)
 -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안 제3조제3항)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안 제3조제4항)
- 여비의 지급기준 규정 (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생략

5. 현행조례 : 붙임 2

6. 관계법령 : 붙임 3

【붙임1】 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①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 2조제 3항 관련)

○ 2023년도 ~ 2026년도

구 분	월정수당 지급액
2023년도	매월 3,190,000원 (연3,828만원)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적용)
2024년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
2025년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
2026년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

[별표 2]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표(제 2조제 3항 관련)

구 분	의정 활동비 지급액	
	의정 자료수집·연구비	보조 활동비
의 원	월 90만원	월 20만원